

자문위원회운영규칙

제정 2011. 2. 21. 규칙 제13호
타 규정의 개정(정관) 2015. 6. 30. 규칙 제100호
개정 2015. 11. 25. 규칙 제121호
타 규정의 개정(정관) 2020. 6. 4 규칙 제198호
개정 2022. 5. 17. 규칙 제24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(이하 “정보원”이라 한다) 정관 제51조에 의하여 정보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6.30, 2015.11.25., 2020.6.4.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정보원 운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.
<개정 2015.6.30>

1. 정보원의 기본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6.30>
2. 정보원의 중·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6.30>
3. 정보원의 새로운 사업 및 정책의 건의, 사무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6.30>
4.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자문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5.17.>

-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.
- ③ 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자격기준) 위원은 보건 및 복지, 정보기술, 경영, 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. 다만, 「인사규정」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5.17.>

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촉장 및 증명서발급) ① 원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관련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위원 위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7조(해촉) ①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그 종료일 다음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- ② 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4조 단서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
2.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
3. 해외이민 또는 사망한 때
4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제8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고, 그 회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운영) ① 회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서면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료협조) 정보원의 각 본부(실, 부 또는 센터를 포함한다)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6.30, 2015.11.25>

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 ① 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개인별 또는 그룹별 서면자문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의 유지)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기간 중 또는 해촉 후에도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위원회 관리 주관본부장이 담당한다. <개정 2015.11.25>

-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1.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
 2. 위원회의 소집 및 자문결과 통보에 따른 업무
 3. 기타 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4조(보칙)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<2011.2.21.>

이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칙 제100호, 2015.6.30>

이 규칙은 2015. 5. 22. 승인된 개정정관의 시행일(2015. 7. 1.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칙 제121호, 2015.11.25>

이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칙 제198호, 2020.6.4>

이 규칙은 2020. 5. 12. 승인된 개정 정관의 시행일(2020. 6. 4.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칙 제248호, 2022.5.17>

이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호

위 촉 장

성 명 :

위촉기간 :

귀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
문위원회 위원(○○○분과)으로 위촉합
니다.

20 년 월 일

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

제 호

자문위원 위촉 증명서

(○○○분과)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주 소 :

위촉기간 : . . . ~ . . . (현재 또는 까지)

위의 사실을 증명함

년 월 일

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